

우리나라 石油産業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 “脱化石 연료시대”와 자율화 과제 -

安 柄 勳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金 在 哲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1. 머리말

우리나라 석유업계의 90년대 상황은 과거와는 매우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石油부문의 정책과 기업운영의 대응방안의 기민성이 그 어느때 보다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에서는 90년대의 새로운 상황전개에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두가지 문제에 대한 필자들의 연구내용의 개요를 부분적이거나 소개하여, 추후 이들 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하나는 우리나라 석유업계의 최근의 적극적인 각종설비투자에 대한 신중론의 하나로써 지구환경문제, 특히 이산화탄소 방출량규제를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며, 이에 대해 石油부문의 대응방안 특히 현재 추진중인 설비증설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동안 지속되어온 정부의 석유산업규제의 부분적 자율화추세에 있어 인식되어야 할 논리적 틀을, 특히 석유기금을 통한 이윤율규제의 역할과 의미를 寡占産業에 대한 규제의 산업조직론적 차원에서 재평가해 보고자 한다.

돌이켜 보건대, 80년대초반은 석유제품수요에 대해 암울한 시기였다고 하겠다. 石油價양등과 경기침체등으로 인한 석유수요의 하락세는 정유업계의 설비가동률을 위험수위에 낮추어 놓았었고, 탈석유전원계획등으로 인한 급속한 석유제품수요의 경질화현상은 중질유분해 설비를 비롯한 설비의 유연화투자의 부담이 가중되던

시기였다고 보아야겠다.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석유가의 지속적인 안정, 소위 三低현상으로 인한 경기활성화 및 무역흑자등으로 인해, 석유의존도는 오히려 증가하고, 석유제품수요는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석유제품수요의 급증은 그동안 논의되어오던 석유산업자율화에 대비한 先占노력과 함께 각 정유사간의 설비증설 경쟁분위기마저 야기시켰다 하겠다.

현재 상압증류설비는 84만배럴규모이나, 증설이 완료되면 107.5만배럴규모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탈황시설이나 reformer등도 증설되어 석유부문의 설비규모는 상당히 증가될 것이다. 지난 2~3년의 수요증가추세가 지속된다면 별문제가 없겠으나, 현금의 경기추세로 보아 수요증가추세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90년 초반에는 설비과잉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이 석유산업의 자율화와 병행하여 발생하면, 소위 과당경쟁의 소지가 농후하여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여기에 부가하여, 앞으로 1~2년내에 불어닥칠 이산화탄소감소를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여야 할 경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石油수요감퇴 또는 제품수요패턴의 변화는 또 다른 政策변수로 등장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고는 우선 이러한 지구환경변화에 대한 국제적 움직임을 상기시키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긴급성을 지적하고, 이와 더불어, 90년대의 석유부문의 최대 과제의 하나인 자율화문제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기금제도에 대한 산업조직론차원의 논리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지구환경문제와 석유산업의 과제

호사자들의 토론제목으로만 여겨졌던 지구온실효과 문제가, 이제 눈앞의 현실로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에너지부문의 이에 대한 인식은 전무에 가깝다고 하겠다. 지난 6월의 하와이 국제회의는 바로 이러한 에너지와 지구온난화과의 상호연계성을 주제로 열렸고, 내년초 인도 뉴델리에 개최예정인 국제에너지경제학회 세계대회도 에너지와 환경을 주제로 삼고 있는 등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하겠다. 필자들의 이부문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개략적으로나마 소개하고, 그 대응방안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최근 G7 정상회담에서 주요의제로 다루어진 지구온실효과문제의 주변중의 하나가 이산화탄소(60% 정도)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아직도 이산화탄소가 어느정도 지구온도상승에 기여하고 있으며, 온도상승으로 인한 영향은 어느정도인지에 대한 연구는 갈 길이 멀다 하겠으나, 이산화탄소방출량의 급증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문제는 탄소성분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는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석유를 포함한 화석연료의 수요는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데에 있고, 같은 화석연료 중에도 열량당 탄소함유량이 적은 가스 등 청결연료로의 전환이 기대된다는 데 있다.

일반적인 지구환경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실제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논의되기는 매우 최근의 일이다. 주로 선진국위주의 노력이긴 하였으나, 산성비와 오존층파괴문제에 대하여는 작년 여름 어느 정도의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산성비의 경우는 유럽공동체에서 79년에 조약이 이루어졌고, 85년에 프로토콜(의정서)이 발의되었다. 오존층보존의 경우는 85년에 조약, 87년에 의정서(프로토콜)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에너지수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산화탄소감소 문제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유사한 국제적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현재 이산화탄소문제를 위시한 지구온실효과(Green-house Effect and World Climate Change)에 대응하기

위하여 UN환경기구(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 UNEP)와 국제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 WMO)를 중심으로 政府간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IPCC)를 발족시켰으며, 이 기구를 중심으로 정부간 의정서의 필요한 기초자료를 준비중에 있다. 금년 11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내년 초에 이집트에서, 그리고 내년 8월에 북경에서 국제모임이 있어, 국제의정서의 발의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 정확한 형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필자가 참가했던 금년 6월의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주최의 “지구온난화와 에너지정책”에 관한 국제회의의 분위기로 보아 2005년의 전세계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1988년의 80% 수준으로 감축시킬 것을 제안한 1988년 6월의 Toronto지구환경회의 공동선언문의 내용이 근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산화탄소 방출의 주범이 서방선진국과 소련, 중국을 위시한 공산국들이어서, 남북, 동서진영간 이해상충과 개발도상국들의 비협조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하나, 소위 신흥공업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어떤 형태로든 특혜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美國은 금년 7월에 상원의원 16인이 공동제안한 법률안에서, 2000년까지 국내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20% 감축, 2015년까지 50%로 감축하기로 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에서 가스등으로의 전환, 재생가능한 비화석에너지로의 전환,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및 열효율향상과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의 집중투자가 동시에 동원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전세계 이산화탄소, 방출량의 5~60%는 石油, 석탄 및 가스의 연소에서 발생하므로, 예상되는 국제간 협약을 감안할 때, 일부 개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90년대 에너지수급상의 최대변수로서 환경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같은 맥락에서 석유산업의 최대 과제중의 하나로서도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공업국으로 갖 부상한 자원빈국인 한국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며, 지구환경문제에의 대응여하에 따라 국내에너지산업의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마저 고려해야 할지 모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산화탄소 문제의 심각성이 별로 인식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미국수준까지는 아

나라 하더라도, 예컨대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현수준에 동결한다고 가정할 때 에너지부문에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국제동향에 대한 상황파악이 늦어 의정서에서 금지하고 있는 CFC 및 프레온생산시설을 때늦게 건설하여, 의정서에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 石油제품수요가 최근 상당한 증가세를 나타내, 정유사간 적극적인 설비증설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90년대초 설비과잉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산화탄소문제까지 가세할 경우 정유사들의 설비증설 장기계획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재평가가 불가피해 보인다. 石油産業에서만이라도 CFC의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거론되어 왔던 종합에너지회사로의 변신의 필요성은 이산화탄소문제로 인해 이제 당연한 장기전략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石炭開發輸入 등 보다는 탄소분이 낮은 가스연료나, 한걸음 더 나아가 비화석연료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수소에너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이며, 石油會社들도 기술혁신능력을 증강시켜 이러한 안전하고, 청결한 비화석연료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영자원을 집중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1970년대에는 원유가격급등으로 인한 “탈석유시대”가 상당기간 지속되었고, 이에 따른 대체에너지개발, 에너지절약투자등이 활발하였으나, 그 이후 석유가격의 안정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이완되어 왔다. 그러나, 필자들의 견해로는 이제 지구환경문제의 대두로 상당기간, 더 나아가 영원히 “탈화석연료의 시대”가 우리와 함께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석유산업을 위시한 제반 에너지정책이 이러한 시각에서 한번 더 평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외부적 상황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 석유산업은 조속히 체질강화의 政策추진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대표적인 석유산업구조정책의 하나인 최고가격제와 사후이윤율규제를 위한 석유기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요구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의 피상적인 논조에서 벗어나 본 연구팀에서 수행중인 寡占産業에 대한 산업조직이론에

바탕을 두고 석유산업규제와 기금제도의 역할과 대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3. 규제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의 정립

현재 우리나라의 石油사업에 대한 정부규제는 크게 나누어 수출입규제를 포함한 진입규제와 이윤율규제로 대별할 수 있다. 그간 취약한 경제기반과 불안정한 국제원유시장의 여건하에서 이러한 규제정책이 석유산업 자체의 발전은 물론 에너지의 원활한 수급을 통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여 왔음은 결코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경제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발맞추어 석유산업 내에서도 종래의 안정성 위주의 산업정책으로부터 탈피하여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와 의식의 전환에 부응하여 정부도 石油産業의 자율화를 위하여 제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최근 3단계에 걸친 석유산업규제 합리화 추진방안을 확정할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自律化의 수용자세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 규제제도의 당위성과 성과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인 평가가 자율화 추진방향의 정립에 앞서 선행되지 않는 경우 본말전도와 시행착오의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현 규제제도를 정유부문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개선방향의 기본적 줄기를 제시함으로써 차후 수행될 실증적 분석과 보다 구체적인 제도개선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진입규제는 산업구조의 기본적 골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규제형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유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요건을 갖춘 후 동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잠재적 진입자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이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진입장벽이 합당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으로서 보통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상태와 파괴경쟁(Destructive Competition)의 위험성을 들고 있다. 자연독점은 한개의 기업이 공급을 담당하는 경우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최대로 하고 기타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사회적으로 생산비용이 최소가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과다경쟁의 위험이 높은 산업은 진입비용이 거의 없어 진입이 비교적 용이한 반면 고정비용의 비중이 비교적 높아 경기하강시 초과설비가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격심한 가격경쟁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자연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든 과다경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이든 법적 진입장벽을 설치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경쟁이 제한되어 독점에 의한 자연배분의 왜곡이 일어나며 생산자 이윤이 과대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분배면에서의 왜곡의 소지가 있게 된다. 따라서 진입규제는 통상 이윤을 규제를 동반하게 된다. 이윤을 규제를 위하여 보통 자본량에 대한 일정한 허용이익을 정하고 예상되는 비용을 이에 더하여 총허용수입(Revenue Requirement)를 정한다. 다음으로 이 총허용수입을 예상판매량으로 나누어 판매가격을 정한 다음 規制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가격 규제가 일어나게 된다.

이상의 간단한 진입과 이윤율규제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을 검토하여 보기로 하자. 먼저 진입규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정유산업은 5개의 사업체로 이루어져 있는 과점산업의 형태이다. 따라서 진입규제가 설득력을 얻기 위하여는 이 산업이 자연과점 혹은 과다경쟁의 위험성이 있음을 보여야할 것이다. 정유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압 증류시설을 포함한 거대한 장치가 필요하게 되므로 막대한 進入비용이 수반된다. 따라서 정유부문에서는 진입장벽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통상적인 과다경쟁의 위험은 비교적 약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점산업의 특성상 설비확장과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비가격경쟁은 심각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위에서 언급한대로 정유産業이 거대 장치산업이므로 규모의 경제가 클 것으로 생각되므로 자연寡占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진입규제의 당위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정유산업이 과연 자연寡占인지, 자연寡占이면 몇개의 기업이 존재하는 것이 최적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있어야할 것이다. 자연독과점에 대하여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나, 실증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실증분석을 행할 경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시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어 구체적인 결론을 얻기 전에는 정유산업의 안정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당분간은 진입규제제도의 골격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정유부문과는 대조적으로 수출입부문에 대해서는 과다경쟁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수출입의 제한이 없다면 국내외시장이 호황인 경우 많은 수의 수출입업자들이 일정규모의 저유시설을 갖추으로써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기가 하강하는 경우 초과저유설비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수출입업자와 정유사등 판매업자간의 자기파멸적인 경쟁과 그 결과로 고정비용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수출입부문으로부터의 퇴출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막대한 퇴출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퇴출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사적인 퇴출비용 뿐만 아니라 석유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수출입업자의 집단적인 진입과 퇴출은 시장의 안정성을 해쳐 사회적인 비용을 동시에 발생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출입규제 역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있기 전에는 전면적인 철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이윤율규제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자. 정유산업에 대한 이윤율규제의 가장 큰 특징은 통상 이윤율규제가 독점기업에 대한 것임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이 규제가 과점산업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통상적인 이윤율 規制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이윤율규제를 각사에 적용하는 경우 각사의 총허용수입에 근거한 각사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상이하게 된다.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사별로 다른 가격을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각사에 대한 개별규제는 시행할 수 없게 된다. 정유업의 경우에는 결합생산에 의한 다수제품이 생산되고 그에 상응하는 다수의 가격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개별규제가 아니고 정유사 전체에 대한 이윤율규제가 행하여지고 있다. 다시 말하여 정유산업 전체를 한개의 기업으로 보아 이윤율규제를 행하는 셈이 되며, 정유사전체의 총허용이윤에 근거한 제품별 가격을 정부가 결정·고시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한 종류의 원료(원유)로 부터 다수의 제품(휘발유, 경유, 납사 등)이 결합생산되므로 정부로서는 제품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높은 자유도

Degrees of Freedom)을 가지게 되어 각 제품시장의 수급의 원활한 조절수단을 갖게 된다.

정유사전체에 대한 이윤율규제라는 특징 외에도 외국의 경우에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제도로서 석유사업 기금제도로 대표되는 事後精算制度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사후적으로 허용이윤을 넘어서는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 石油사업기금을 적립하는 제도이다. 통상적인 외국의 이윤율규제제도의 경우 총 허용수입에 의거 허가된 판매가격은 일정기간 동안 시행되며 이 기간중 얻어지는 초과이윤(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이 회사에 귀속되고 초과이윤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판매가격의 하향조정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규제시차(Regulatory Lag)로 부르며 가격의 수시조정의 어려움 때문에 필연적이나 부수적인 효과로서 規制시차기간동안 초과이윤의 획득을 위하여 규제 기업이 경영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게 되는 경향이 있게 된다.

이론적으로 볼 때 이윤율규제의 측면에서만 보면 가격규제는 사전적으로 정유사가 허용이윤만을 얻도록하는 제도이며 사후정산제도는 사후적으로 실제이윤을 허용이윤에 조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윤율규제를 위해서는 가격규제나 사후정산제도 중 하나만 필요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가격결정과 사후정산의 두개의 절차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어 이윤규제에 있어 중복이 일어나고 있다. 사후정산제도와 가격규제의 중복규제는 소비자와 정유사간의 불공평한 잉여 분배라는 폐해를 야기하며 부차적으로 정유사간의 침해한 상호대립의 관계를 조성한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일사의 비용절감은 가격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절감부분 전부가 초과이윤으로 나타나게 되며 따라서 절감부분의 전액이 사후정산을 통하여 환수되어 소비자에게(실제로는 기금에로의 전입) 이전된다.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비용절감을 성취한 회사는 그렇지 못한 회사로부터 비용절감의 일부를 보상받는 셈이 된다. 비록 완전경쟁의 경우에서도 소비자와 정유사간에 이와 비슷한 잉여의 분배가 일어나게 되나 비용절감의 혜택 전부가 소비자에게 이전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현 제도하에서는 비용절감을 이룩하지 못한 기업은 완전경쟁의 경우에 비하여 과도한 손실을 입게 되며 소비자는 과도한 잉여를 향유하

게 된다. 만약 정유사 전부가 비용절감에 성공하면 그 이익은 모두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현상이 일어나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도 공평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가격규제와 사후정산제도 중 한 제도만으로 이윤율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필자들의 견해로는 사후정산제도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욱 우월한 제도로 평가된다. 첫째로 사후정산제도는 기금의 설치를 가능케하여 석유산업 및 전 에너지산업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불안정한 국제石油시장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내제품가격이 안정적일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기금제도의 공헌으로 돌려야 될 것이다. 원유소요량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여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기금제도의 필요성은 계속 존재할 것임은 재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두번째로는 가격이 자율화되게 되면 현행제도하에서와 같은 불공평한 잉여의 분배가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그 이유는 비용절감의 효과가 일부는 경쟁에 의한 가격인하로 흡수되고 나머지만이 총허용수입과 사후정산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침해한 시간 이해대립도 줄어들 것이다.

셋째로 가격자율화의 결과 사간 경쟁에 의한 효율성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이윤율규제가 없는 경우 파점산업의 특성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최적의 공급을 가능케하는 충분한 경쟁은 일어나지 않은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필자들의 이론적 연구에 의하면 사후정산제도에 의한 이윤율규제는 경쟁의욕을 높여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 최적상태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가격규제에 의한 이윤율규제로는 경쟁의 여지가 없어 이와같은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넷째로 가격자율화는 장래에 있어서 보다 본격적이고 전반적인 자율화의 추진을 위한 전초단계로서 파악할 수 있다. 그간 정유사들은 엄격한 규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비경쟁체제에서 안주하여 왔다. 따라서 자율화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것만으로는 정유사들이 즉각적으로 경쟁체제에 돌입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격자율화는 정유사들의 경쟁

체제로의 의식전환을 돕는 조정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와같은 사후정산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수급조절이 필요한 제품시장의 경우 정부에 의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개입은 어렵게 되는 단점이 있음이 지적될 수 있으나 이는 조세제도등 간접규제수단으로 어느정도 조절이 가능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시장기능의 회복에 의한 효율성 증대에 의하여 충분히 상쇄될 것이다. 이밖에도 기금의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며, 초과이윤이 기금에 완전히 흡수됨으로써 정유사들의 투자재원의 적립이 어려워지는 단점 등이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결론적으로 진입규제의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결론이 유보되어 있는 현 상태에서는 진입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는 것은 안정성의 측면에서 극히 위험하다고 하

겠다. 수출입규제의 폐지 역시 같은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진입규제와 수출입규제가 적어도 당분간은 존속한다고 볼 때 정유사의 이윤율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 현재의 이윤율규제는 중복규제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형태의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가격규제를 폐지하고 사후정산에 의한 이윤율규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경쟁에 의한 효율성제고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필자들에게 의해 사후정산제도에 의한 이윤율규제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사후정산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으며, 이와 별도로 지구환경문제와 에너지종합수급에 관한 총체적 연구가 시작단계에 있으므로, 그 결과는 다른 기회를 통하여 발표될 것임을 부연하면서 본고를 맺고자 한다. ♣

□ 석유동향분석 □

90년대 전반 油價 다시 오른다

90년대 전반의 세계석유생산이 감소되면서 유가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석유정세분석에 강한 美國의 솔로몬 브라더스 증권회사는 최근 美國·英國·캐나다 삼국의 원유생산이 환경문제로 높은 코스트로 '93년까지 연 1~4%씩 감소하리라는 최신 예측을 내놓았다.

이 예측에 따르면, 원유가격은 미국산의 경우 연 약 5%씩 상승, '93년에는 배럴당 23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천연가스가격은 크린에너지 선호현상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 연 약 12%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석유수요에 대해서는 '93년까지 연율 2% 정도의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선진국측의 공급면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예측의 특징인데, 특히 서방 3대 선진국들의 원유생산이 '90년 이후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연평균 감소율은 미국이 3~4%로 최대의 폭이고 캐나다·영국은 1~2%

정도일 것으로 예측했다.

同社의 버나드 피크씨는 알래스카 원유누출사고의 영향도 있어 미국을 중심으로 환경문제로부터 원유개발·생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코스트의 상승으로 석유메이저들도 생산을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사정에 의해 OPEC원유수요가 일시적으로 하루 2,500만배럴까지 증가, OPEC의 예상생산량인 2,400만배럴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세계의 석유수급은 타이트해져, 미국산원유인 WTI(서부 텍사스 중질유)의 가격은 금후 4년간 배럴당 4.40달러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보다 대기오염도가 낮아 주로 발전소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천연가스는 그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미국 멕시코만에서의 천연가스가격은 1천입방피트당 '89년예상 평균가격인 1.75달러에서, '93년에는 2.80달러로 60%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